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99
----------	------

제출연월일: 2023. 5. 26.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면제 규정은 두고 있으나, 사회적 배려 대상인 한부모 가족, 등록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는 수수료 면제 규정이 없어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례 내용에 맞는 용어 및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증명 수수료 면제사항 추가 신설

(안 제7조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의 구성원이 신청하는 제증명

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의 뜻에 맞게 제목 등 용어 정비

(안 제7조, 별표 3)

- 수수료의 감면 용어를 수수료의 면제로 변경

다. 수수료 징수할 금액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무료부분 불필요로 삭제

(별표 1)

- 지방세납세증명서 무료 규정 삭제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18692호, 2023. 5. 3.)

라. 입법예고: 2023. 4. 17. ~ 5. 8.(21일간)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수수료의 감면)”을“(수수료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감면”을 “면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14.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별표 1의 제1호라목(1)지방세 납세증명서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감면”을 “면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관계는 <u>감면</u> 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 11.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7조(수수료의 면제) ① -- 각 호의----- ----- ----- 면제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p> <p>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p> <p>14.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p>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수용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 비용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3. 작성자

- 소 속: 세무2과
- 직 급: 지방세무주사
- 성 명: 진선영
- 연락처: (052)290-3421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1. 증명 등				1. 증명 등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서	1통	무료		(1) <삭 제>			
(2) (생 략)				(2) (생 략)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별표 3〉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제증명 등 수수료(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증명 등 수수료(제7조제2항 관련)	
← 15cm →	← 15cm →	← 15cm →	← 15cm →
↑ 15cm ↓	↑ 15cm ↓	↑ 15cm ↓	↑ 15cm ↓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	